

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(제11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     | 대 상 시 설  | 점 검 횟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해빙기진단 | 석축, 옹벽, 법면, 교량,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| 연 1회(2월 또는 3월)                    |
| 2. 우기진단  | 석축, 옹벽, 법면, 담장, 하수도 및 주차장  | 연 1회(6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월동기진단 | 연탄가스배출기, 중앙집중식 난방시설,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  | 연 1회(9월 또는 10월)                   |
| 4. 안전진단  | 변전실, 고압가스시설, 도시가스시설, 액화석유가스시설, 소방시설, 맨홀(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), 유류저장시설, 펌프실, 인양기, 전기실, 기계실, 어린이 놀이터,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| 매분기 1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승강기  | 「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|
|          |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| 매월 1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위생진단  | 저수시설,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  | 연 2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: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.